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유

(1)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2)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소장펀드 수익자과세 안내사항 추가

□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4일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서식개정에 의한 정정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		
		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u>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u>		
		<u>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u>2014. 8. 31.</u>	<u>2014. 12. 31.</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상		<u>환매조건부 매수</u>		
가. 투자 대상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u>개인</u>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관한 사항	<u>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u>	<u>15.4%(지방소득세 포함)</u>		
나. 과세	<u>14%</u>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u>지방소득세</u>		
	15.4% (소득세 14%, <u>주민세</u>	<u>1.4%)</u>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	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 원천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변상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라보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인대소 독, 과서소독,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대간소득세율(최고한도 세월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경기접탁자증권자축 투자산택 이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되었다. 10년 사람 기간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년 가장 기간					
##S-는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역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 특,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울(최고한도 세월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남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전속문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제에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환경 및 조구된는 처리방안 기재 환경 및 모자형전 및 연구 및 전환투자기구의 장시에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함께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환경 및 모자형전 및 연기에 해당 개의 및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당 제약을 해 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당 제약을 한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관한 사항 가 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점점 등 기관소등에는 기관을 제공한다면 대한 기관을 해할 게감사관 및 결합투자기 간의 및 집합투자기간 및 및 집합투자기간 및 및 집합부자기간 및 및 집합자를 및 및 집합자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점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입대소 독,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월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자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다른 동합소득(부동산입대소학자) 상당하거나 원금·이자 ·배당등의 인출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점환하고 양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점부 구래,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점부 구래,다만, 10년 이내에 해당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점후 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천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형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합합에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관한 사항 기상이 되었다면 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합합의하얀 합니다.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가 가의 기억을 해할 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기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 기계감사를 받아야합 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 기계감사를 받아야합 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 기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 기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단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한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사람이 되었다면 함께 가장 보이다면 합니다.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다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업자를 함께 가장 수업자를 받았다면 합니다 보다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나라 나는 수업자를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수업자를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수업자를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수업자를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수업자의 기관을 하는 수업자의 기관을 받았다면 합니다 보다 수업자의 기관을 받았다면 합니다 보다 수업자의 기관을 하는 전략적으로 하는 수업자의 기관을 받았다면 합니다 보다 수업자의 기관을 받았다면 합니다 보다 수업자의 기관을 받았다면 합니다 기관을 하는 제공합 기관을 하는 제공합 기관을 하는 제공합 기관을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 등,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자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법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관한 사항 가. 임호 등의 인출 사례 기관 한 경우 다만, 건천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형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하지에 관한 사항 가. 임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의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최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최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기관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기관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대한도등대한 이 개인소등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제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 존득별세 별도 부과).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개정사항 반영 환하고 생물하고 않습니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의 되는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처를 해할 우리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장하는 경우는데 기계 및 이내에 해지, 한병 및 모자형전환, 준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광시에 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원이내에 해지, 한병 및 모자형전환, 준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입자와합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원이내에 하지, 한병 및 모자형전환, 준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입자와합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의 대청 한당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대체 의해가가 말의 및 집합투자기가의 의계를 취임하다 합니다. 가는경기보고서 대체를 하는 기계를 제공하는 집합투자자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의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		
대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로독공제를 점해 감면받는 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개정사항 반영 1 개정사항 반영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가 의무해지 4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4 인의해지 4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5 관측 등 처리계획을 신탁입자와 합의에 합기하는 경우에는 1개원 이내에 해당 경우로 제외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4 장기집합부자 기관을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실하지 일 및 집합투자간 기관의 해제에 관한 사항 기・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	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4) 강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한 사항 대한 기자 함께 필요한 사항		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	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됩니다. 4) 경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에 관한 사항 답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한 사항 대한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한 사항 대한 제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한 사항 대한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한 사항 기. 의무해지 전한 사항 기. 의무해지 전한 사항 기. 의무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전한 사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②회계감사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 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무 계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집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기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기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 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 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나 임의해지 보한 사항 나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라한 사항 나 임의해지 관한 사항 수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원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과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를 제감사관련 내용 기재 제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됩니다.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ㆍ양도하거나 원금ㆍ이자ㆍ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도독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보기,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보드부과).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하지 · 양도하거나 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병계별도 부과).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추별계별도 부과).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설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원 생활.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할의해야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원이 하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할의해야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경기보고서 회계감사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원 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구의 해제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 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입의해지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구 등 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임의해지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구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임의해지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 소구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니다. 다만, 수의자의 이익을 해할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 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나. 임의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다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비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 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합의해야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가 전에 대하여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가 가능한 시항 가. 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대체를 당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기관 기계 회계감사를 받아야합합니다.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		
내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가항 보기 전환 기계 등 기계 등 기계 등 기계 등 기계 등 기계 기가 만의 및 집합투자 기가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의 대상 기계 기가 되었다는 기계 등 기계		- 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	- <mark>촌특별세 별도 부과</mark>).다만, 10년 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		
지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제출 등 과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라한 사항 기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제출 등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법 개정사항 반영(5) 수익자의 홍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 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용하지 않습니다.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가. 의무해지법 개정사항 반영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합의해야합니다.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③회계감사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③회계감사 관일 및 집합투자개산에 대하여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회 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가. 의무해지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 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 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관한 사항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9의 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기가 무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의무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9의 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기가 무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		
나. 임의해지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 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한,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현의해야 합니다. ③회계감사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기가 경기보고서 한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기가 가 함께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기가 가 함께 하여 회계기간 말의 및 집합투자기 기가 가 하여 회계기간 말의 및 집합투자기 기가 기가 하여 회계기간 말의 및 집합투자기 기가 기가 가 하는 집합투자 기가 기가 가 하는 집합투자 기가 기가 기가 가 있다면 하는 집합투자 기가 기가 기가 기가 있다면 하는 집합투자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있다면 하는 집합투자 기가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의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설치 기재 등 기재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의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기가 모양 및 집합투자기 기가 가입부터 2개월 이내에 회 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가. 정기보고서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나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u>기개 기가 </u>					
로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게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u>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u>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					



<u>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
<u>니다.</u>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u>억원 이하인 경우</u>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
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
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
오

